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2553
번 호	

제출일자 : 2024. 8. 23.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위탁대상	위탁기간(최초위탁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994. 11. ~ 현재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옥외광고물 신규·연장 허가 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사무처장	부장	직원	계
인 원	1	2	4	7

라. 위탁기간 : 3년(2024. 10. 26. ~ 2027. 10. 25.)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성과평가 실시)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결정

아. 성과평가 결과 : 적합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불임첨부

자. 향후일정

- 2024. 9. : 임시회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4. 9. :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결정 통보
- 2024. 9. :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전문개정 2023. 4. 28.)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

24. 4. 1.)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목개정 2024. 4. 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4. 28.)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

1. 수탁기관의 선정(신설 2024. 4. 1.)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신설 2024. 4. 1.)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4. 1.)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4. 28.)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2024. 4.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민 간 위 탁 추진 목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위험 대비 ○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도시과-13255(2021. 10. 7.) ○ 추진현황 - 최초위탁 : 1994. 11. ~ - 재계약 이후 위탁 : 2024. 10. 26. ~ 2027. 10. 25. ○ 위탁기간: 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물 신규·연장 허가 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길이 10m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적 정 성 검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운영 시 안전점검 관리자의 채용이 어렵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예상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 업무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음 ○ 경제적 효율성 -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점검 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없음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하면서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전문지식 또한 갖추고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안전 점검한 광고물 종류, 규격, 주소 등 안전점검 관리 목록작성으로 성과측정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달성군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수탁기간: 2021. 10. 26. ~ 2024. 10. 25. ○ 위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최초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현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안전점검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안전점검에 따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군청과 협회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전 문 가 의 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건여	○ 해당 사업의 수탁 가능 업체 수: 총 1개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재계약 사유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대상기관 검토 내용	위탁사무명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기간	예산 없음 / 2024. 10. 26. ~ 2027. 10. 25.
	대상기관명(대표자)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대표 : 황태하)
	주요사업	안전점검업무 사업,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1994. 11. 최초위탁
	인력현황	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직원 4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100% 이직률: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240,407천원 - 고정자산 및 보조금 : 141,780천원 - 유동자산 : 98,627천원 부채 : 74,372천원 수입 : 385,615천원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옥외광고’ , ‘건축’ , ‘전기’ 분야 자격소지자 근무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2021~2024년)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대표: 황태하)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동
(기업은행건물) 2층
(Tel. 053-604-4383)
3. 설립목적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2와 동시행령 제41조의 2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1982. 09. 09.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 설립허가
1994. 04. 01.	안전도검사 위탁업무 개시
2001. 04. 0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업무 수탁
2003. 10. 27.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업무 수탁
2004. 10. 27.	극장(시민)벽보판 관리업무 수탁
2004. 04. 26.	협회명칭 변경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
2011. 03. 04.	대구옥외광고협회 법인 설립
2021. 06. 14.	협회명칭 변경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5. 주요사업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 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신기술도입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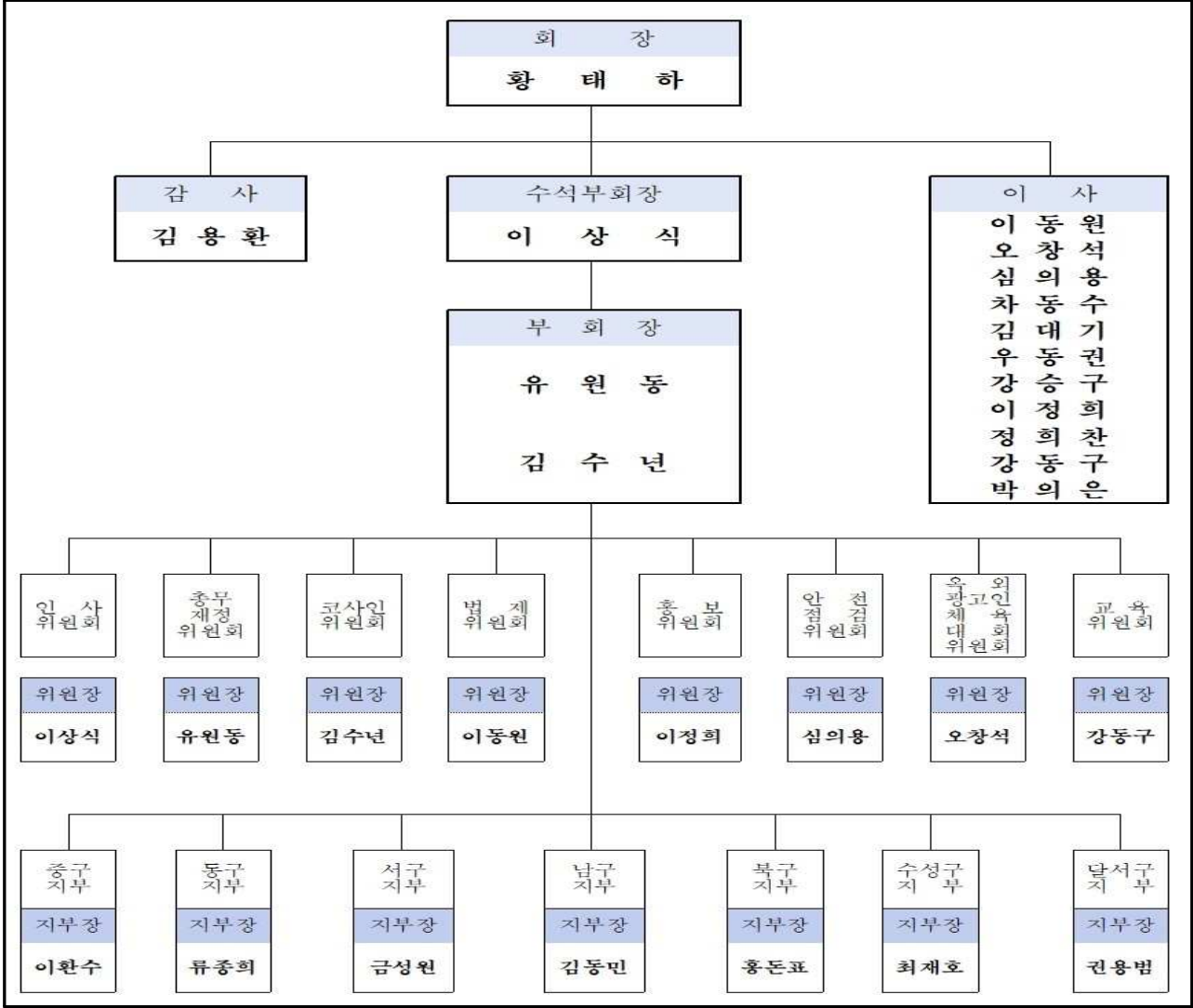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회장	황태하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현)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이사 - (주)한신후렘 대표
감사	김용환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감사(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역임 - 협신애드 대표
수석부회장	이상식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수석 부회장(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조직위원장 역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장 역임 - 대신기획, 대신광고공사 대표
부회장	유원동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겸 총무재정위원장(현)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달서구지부 지부장 역임 - 날으는 곰 대표
부회장	김수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겸 코사인위원장(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장 역임 - 광고회사 한강 대표
이사	오창석	- 대우광고사
이사	이동원	- 마루광고
이사	심의용	- 대성에스씨
이사	차동수	- 해광애드
이사	김대기	- 세움싸인테크
이사	우동권	- 휴먼광고사
이사	강승구	- 나이스광고
이사	이정희	- 브라운애드종합광고
이사	정희찬	- 선우
이사	강동구	- 아세아아트팩토리
이사	박의은	- 에스제이디자인
중구 지부장	이환수	- 한애드
동구 지부장	류종희	- 대영광고
서구 지부장	금성원	- 단지애드
남구 지부장	김동민	- 디올디자인
북구 지부장	홍돈표	- 개미광고
수성구 지부장	최재호	- 호야엔터테인먼트
달서구 지부장	권용범	- 애드란광고

7. 직원현황: 총 7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사무처장	이호원	옥외광고사	관리감독	2022.3. ~	정규직
부 장	공희남	전기기능사	전기	2012.6. ~	정규직
부 장	한승달	건축기사	건축	2012.7. ~	정규직
대 리	조수임	-	회계	2022.5. ~	정규직
팀 장	윤아현	-	게시대,벽보	2023.6. ~	정규직
주 임	이상운	-	게시대,벽보	2024.4 ~	정규직
사 원	심의용	옥외광고사	옥외광고사	2017.11. ~	정규직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240,407 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타재산	당좌(현금)	예금	98,627
기본재산	부동산	보증금 및 고정자산	141,780

나. 부 채: 총 74,372 천원

내 용	금 액(천원)
미지급 결제(차량 구입 할부금) 등	74,372
보증금 및 고정자산	-

다. 수 입: 총 385,615 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회 비	56,330
안전수수료, 광고료, 교육 수수료 기타등등	330,285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재협약 현황	○ 재협약 횟수: 3 회 (최근 10년 간) - 2015. 10. 26. ~ 2018.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 - 2018. 10. 26. ~ 2021.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 - 2021. 10. 26. ~ 2024.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 - 2024. 10. 26. ~ 2027. 10. 25.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의결)															
사업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table><tr><th>년도</th><th>안전점검 건수</th><th>점검 수수료</th></tr><tr><td></td><td>404건</td><td>13,381,300원</td></tr><tr><td>2021</td><td>149건</td><td>5,041,320원</td></tr><tr><td>2022</td><td>103건</td><td>3,375,900원</td></tr><tr><td>2023</td><td>152건</td><td>4,964,080원</td></tr></table>	년도	안전점검 건수	점검 수수료		404건	13,381,300원	2021	149건	5,041,320원	2022	103건	3,375,900원	2023	152건	4,964,080원
년도	안전점검 건수	점검 수수료														
	404건	13,381,300원														
2021	149건	5,041,320원														
2022	103건	3,375,900원														
2023	152건	4,964,080원														
성과평가 결과	○ 평가일시: 2024. 8월 ○ 평가기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총 평: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의결															
향후 추진계획	○ 군청으로 안전점검 신청 시 협회로 안전점검 의뢰 ○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한 군청과 협회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참고

심사집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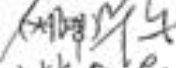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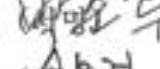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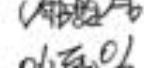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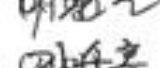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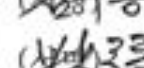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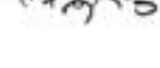
심 사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합계	평균							
425	85	12	13	82	75	24	74	82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 합계 및 평균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5 점으로 위 기관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제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정부적정 한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24. 8. 19.

위원장	부	군	수	배춘식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위원		박순옥			
위원		성모경			
위원		이돈일			
위원		김수홍			
위원		박주용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수탁 재계약 심의
심의요지	▶ 심의대상 수탁기관 - 수탁법인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재계약 기간 : 2024. 10. 26 ~ 2027. 10. 25
의결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5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수탁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u>적정</u> / 부적정 함을 의결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 4 . 8 . 19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부 군 수 배춘식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위 원 박순옥 위 원 성모경 위 원 이돈일 위 원 김수홍 위 원 박주용 